

제409회 정례회
'23. 6. 9.(금)

검 토 보 고 서

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
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
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
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만 나이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 「행정기본법」(2023. 6. 28. 시행)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(제7조의2 신설)에 맞게 우리 道 조례 중 만 나이를 규정한 조문에서 “만” 표시를 삭제·정비하려는 것임.

※ 만 나이 원칙에 관한 「민법」 개정(법률 19098호)시 “만 00세”를 “00세”로 개정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기업사항과 지원에 관한 조례 (안 제1조)
 - “만 60세 이상” → “60세 이상”
-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(안 제2조)
 - “만 32세 이하” → “32세 이하”
-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안 제3조)
 - “만 12세 이하” → “12세 이하”
-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(안 제4조)
 - “만 19세 미만” → “19세 미만”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행정기본법」이 나이를 '만(滿) 나이'로 계산하고 연수(年數)로 표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'만(滿) 나이'를 적용하는 충청북도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나이 계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이 '만(滿) 나이'로 통일됨에 따라 충청북도 조례 중 '만 나이'를 규정한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4개 조례의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

< 만 나이 사용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>

구 분	현 행	개정안	비고
「충청북도 기업사항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	만 60세 이상	60세 이상	
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조	만 32세 이하	32세 이하	
「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	만 12세 이하	12세 이하	
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3조	만 19세 미만	19세 미만	

-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'만(滿) 나이'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,
 - 일상생활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세고 새해가 되면 한 살 증가하는 '세는 나이(한국식 나이)'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
 - 또한, 「병역법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'연 나이'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

- 이처럼 나이 계산 방식의 혼재로 사회복지·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지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 행정적·사회적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
 - “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¹⁾”에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·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‘만 나이’로 통일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추진됨
 - 「행정기본법²⁾」 및 「민법³⁾」(‘22.12.27.개정 / ‘23.6.28.시행)에서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하여 ‘만(滿) 나이’로 계산하고 연수(年數)로 표시하도록 명문화하였음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‘만 나이’를 규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4개 조례를 상위법 개정³⁾에 따라 일괄정비하여 불필요한 혼선과 사회적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조례 중 ‘만 나이’를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
 -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‘만 나이’를 사용함으로써 나이로 인한 혼란이나 다툼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며,
 -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

1) 13번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: (나이 기준 통일) ‘만 나이’로 법적·사회적 기준 통일

2)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3)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참고 1

「행정기본법」, 「민법」 개정내용 (’22.12.27.개정 / ’23.6.28.시행)

구 분	개정 前	개정 後
「행정기본법」	제2절 기간의 계산 <신 설>	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<u>만(滿) 나이로 계산</u> 하고, <u>연수 (年數)로 표시</u> 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「민법」	제158조(연령의 기산점)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.	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<u>만(滿) 나이로 계산</u> 하고, <u>연수(年數)로 표시</u> 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※ 「민법」 개정前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‘만 나이’ 계산이 원칙이었음.
다만, 개정前에는 ‘연령의 표시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음

① (분쟁 발생 사례)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

-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“56세”의 해석을 두고 원심은 “만 56세”, 대법원은 “만 55세”로 해석 →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 장기 지속

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“56세”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「민법」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“만”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‘만 나이’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“만 56세”라고 해석했으나,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(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)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“만 55세”라고 해석함(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21두31832 판결)

② (분쟁 발생 사례)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 이해 혼선

-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‘만 나이’로 계산하나, 별도 설명이 없어 일상생활에 익숙한 ‘세는 나이’로 해석하고 계약,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→ ‘만 나이’가 일상화되면 분쟁 발생 소지 사전 차단

“26세 이상” 연령한정 운전특약상 나이 계산법을 ‘세는 나이’로 생각하고 계약 체결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특약내용 설명의무 이행 입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(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)

③ (방역 현장 혼선 사례)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PCR 검사 대상연령 관련 혼선

- 30세 미만(‘연 나이’ 기준)은 아스트라제네카(AZ)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
 - 접종 현장에서는 ‘연 나이’ 기준인지, ‘만 나이’ 기준인지 혼선 발생*
 - * 2021. 5. 30. 뉴스토마토, “만 30세? 빠른 92년생? ‘노쇼 백신’ 나이 두고 현장서 혼란”
- 60세 이상(‘만 나이’ 기준)을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(PCR) 우선순위대상으로 설정
 - PCR검사 우선순위대상 나이 기준 안내 관련 민원 급증, 보건소 업무부담 증가*
 - * 2022. 2. 3. 동아일보, “한국 나이 60인데 PCR검사 왜 안 해줘요... 바뀐 규정에 곳곳 실랑이”

④ (행정 현장 혼선 사례) 일선 행정에서의 나이 계산법 관련 민원 발생

- (평택시) 정부와 국회 등에 나이 계산법 일원화(‘만 나이’로 통일) 건의
 - 법령상 ‘만 나이’가 주로 적용됨에도 각종 사회복지정책 적용대상 등을 ‘세는 나이’ 기준으로 오해하는 일이 잦아 관련 민원 다수 발생*
 - * 2022. 2. 23. 아주경제, “평택시, 연령 계산 기준 일원화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”

⑤ 일상생활 속 불편 사례

-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‘12세 미만 20ml’ 등으로 기재된 경우
 - ‘세는 나이’에 익숙한 일반 국민이 건강·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·용량(‘만 나이’ 기준) 혼동 우려
- 6세 미만(‘만 나이’ 기준) 동반아동 운송운임·요금 무료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조제6항)
 - 나이기준을 ‘세는 나이’ 또는 ‘연 나이’로 혼동, 잦은 환불 민원 발생*
 - * 경기버스 ‘자주 묻는 질문(FAQ)’ 및 ‘불편사항’ 게시판 등 참조